



법무사정보광장 **상업등기 실무**

# 회사의 '대차대조표' 읽기

- 회사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해산 · 청산 업무를 중심으로

박상진 | 법무사(서울중앙) ·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 1 들어가며

상업등기를 주로 하다 보니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볼 일이 잦다. 상업등기 특히 회사분할, 전환사채 발행, 해산 · 청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관련회사의 대차대조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본인은 회계전문가가 아니고, 솔직히 복식부기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적인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팁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간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 2 대차대조표의 구성항목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S; Balance Sheet)'는 특정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의 하나이다. 대차대조표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항목에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 하위계정이 있고, 부채항목에도 유동부채, 고정부채 등 하위계정이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계정과목들은 법무사가 관심 가질 사항은 없다. 자본항목에는 자본금, 각종잉여금 등의 각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본계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금(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주식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기타포괄손익누계(매도가중증권평가손익, 외환차익 등)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예시〉 이익이 난 회사

과목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II 고정자산	
자산 총계	10억
부채	
I 유동부채	
II 고정부채	
부채 총계	5억

과목	금액
자본	
I 자본금	3억
II 각종 잉여금	2억
<u>자본총계</u>	5억
부채와 자본총계	10억

※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 순자산액이며 자본총계로 나타난다. 자본총계는 다시 자본금과 각종 잉여금으로 나누어진다(자본총계=자본금+잉여금). 부채와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와 일치한다(부채도 자산항목임).

〈예시〉 결손이 난 회사

과목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II 고정자산	
<u>자산총계</u>	10억
부채	
I 유동부채	
II 고정부채	
<u>부채총계</u>	12억
자본	
I 자본금	3억
II 결손금	-5억
<u>자본총계</u>	-2억
부채와 자본총계	10억

※ 자본총계가 (-)이므로 채무초과인 상태이다.  
 ※ 결손이 진행되어 자본금 3억을 까먹고 더 나아가 (-)2억 채무초과 상태임.

### 3 각 사례별 대차대조표 보기

#### 1)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 보기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에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2주전부터 분할당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분할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분할은 이를 다뤄본 회계사가 아직 많지 않다.

#### ① 분할대차대조표는 작성하는 기준시점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는 어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분할대차대조표도 어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가? 즉, 그 작성시점을 어느 정도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또는 기왕에 작성된 대차대조표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도 되는가?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왕에 작성되어 있는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분할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보통 회사는 결산기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대차대조표가 작성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업무참고용)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분할대차조표, 승계재산목록 및 부채목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 분할시점보다 5, 6개월 소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회사의 재산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회사의 분할은 영업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영업을 이루는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이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대차대조표는 분할대상 영업과 재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분할계획서 등에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분할대차대조표상의 금액도 분할대상 영업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표시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변동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위와는 반대로 분할대차대조표의 마지막 기준시점은 언제까지인가? 예컨대,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점으로 분할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도 되는가? 분할 절차상으로 보면 분할승인주총일의 2주간 전에 분할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분할주총일의 2주 이전의 어

편 날을 기준으로 잡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따른 차이점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장부상으로 분할한다. 즉, 각 계정과목별로 합이 분할 전과 같도록 나누어지게 된다. 예컨대 자산총계가 10억이었으면 존속회사 7억, 신설회사 3억으로 그 합계액이 분할되기 전 금액과 같도록 분할한다.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넘어가는 영업재산을 새로 평가하여 그 평가가액으로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항목의 금액합계가 분할 전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물론 물적분할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평가하지 않고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도 된다.

〈예시〉 인적분할

과목	분할 전	분할 후	
		기존회사	신설회사
자산 I 유동자산 II 고정자산 자산총계	10억	5억	5억
부채 I 유동부채 II 고정부채 부채총계	5억	2억	3억
자본 I 자본금 II 잉여금	3억 2억	2억 1억	1억 1억
자본총계	5억	3억	2억
부채와자본총계	10억	5억	5억

※ 장부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합계액이 분할 전과 일치한다.

〈예시〉 물적분할

과목	분할 전	분할 후	
		기존회사	신설회사
자산 I 유동자산 II 고정자산 자산총계	10억	5억	7억

과목	분할 전	분할 후	
		기존회사	신설회사
부채 I 유동부채 II 고정부채 부채총계	5억	2억	3억
자본 I 자본금 II 잉여금	3억 2억	2억 1억	1억 3억
자본총계	5억	3억	4억
부채와자본총계	10억	5억	7억

※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자산을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합계액이 분할 전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분할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과 실제 분할일 사이의 재산변동의 처리문제

회사의 재산 상태는 항상 변동된다. 그리고 분할대차대조표는 흔히 과거의 가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반면 분할등기의 효력 즉 회사가 법적으로 분할되는 시기는 분할등기 접수일이다. 따라서 분할대차대조표 작성일과 실제 분할의 효력발생일간에는 간극이 있어 필히 재산 상태가 변동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재산 상태의 변동은 어떻게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해야 하는가? 과거에 작성된 분할대차대조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분할대차대조표 작성시점과 실제 분할일 사이의 재산변동분은 당연히 분할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는 분할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확정(분할)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반영하면 족하다.

보통 대차대조표는 어떤 기준일 이후 상당기간 작업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상당기간 작업하여 확정분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회계실무상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확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회사설립 시 반드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어쨌든 사업년도 말에 분할상태를 반영하여

존속회사는 존속회사대로, 신설회사는 신설회사대로 (결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 2) 합병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 보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을 인위적으로 특정하여 신설회사로 이전하므로 이전할 재산내역을 분할계획서에서 특정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분할계획서에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재산 및 부채목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분할의 경우 분할대차대조표가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반면,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모든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로 승계되므로 양 회사의 재산 상태에 관한 대차대조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즉, 합병 당시의 합병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또는 합병 후의 존속회사 합병대차대조표가 합병등기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합병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합병비율이고, 합병비율은 양 회사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양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 부분은 회계 전문가의 몫이다).

그리고 합병등기의 세금납부와 관련해 합병 당시의 양 회사 대차대조표가 필요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법인(기존법인)과 5년 미만의 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증자등기 시에 기존법인의 자산비율만큼 중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자산총액을 각 회사의 (합병)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 외 현재의 대법원 선례상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무증자 합병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등기선례6-667,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한편, 채무초과는 자본잠식과 다르다. 자본잠식은 손실이 나 납입자본금을 까먹은 상태, 자본총계(순자산액)가 (+)이지만 납입자본금을 밑도는 상태이며, 이

는 ‘부분잠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채무초과는 자본잠식에서 더 나아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즉, 자본총계가 (-)상태인 것을 말하며, 이는 ‘자본전액잠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 3) 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해 대차대조표 보기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총액은 최종대차대조표에 의해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70조). 여기서 현존하는 순자산액이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자본항목의 자본총계에 표시되는 금액이다.

한편,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최근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즉, 대차대조표는 「상법」상 재무제표의 하나로 회사의 결산을 위해 대표이사가 매결산기에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이다.

따라서 회사가 그때그때의 영업상황이나 재산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분기대차대조표 등은 영업상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여기서 말하는 대차대조표가 아니다.

## 4) 해산·청산과 관련해 대차대조표 보기

청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아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회사의 순자산액이 영(零)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채무가 초과된 경우에는 청산절차 대신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순자산액이 플러스(+)여야 한다는 의미는 자본잠식 또는 자본금 결손상태와는 다른 개념이다.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하더라도 채무초과만 아니면 청산이 가능하다. 즉,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과는 상관없이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이 부채가액보다 크다면 청산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